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문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아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식

201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임 정 민

영아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식

이 문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임 정 민

# 인 준 서

임정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2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학대에 대한 인식은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신고의무제에 대한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학대에 대한 인식은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연령, 경력, 학력, 자녀유무,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신고의무제에 대한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현재 서울,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만 2세 이하의 영아반을 맡고 있는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영아교사들에게 설문지를 총 300부 배포하였다. 이 중 27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고 답변 성실도가 양호한 설문지만을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264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알 수 없었던 영아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을 보충하여 듣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 중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영아학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지윤(2000)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영아의 기준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최미영(2007)이 구성한 설문지를 본 논문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F$ 검증,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영아학대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이 가정, 국공립, 법인, 민간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이 가정, 국공립, 법인, 민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적학대에 대한 인식은 자녀가 있는 교사가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이 가정, 국공립, 법인, 민간에 따라, 방임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영아교사들은 신고의무제에 대해 알고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학대 행위 및 처벌 규정 등 구체적인 신고의무제와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교사들은 지금까지 학대 사례를 의심했던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만약 의심되는 학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하겠지만, 훈육과 학대와의 명확한 구별이 없어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아동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의 학대를 막기 위해,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홍보로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5
3. 용어의 정의 .....	5
II. 이론적 배경 .....	7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	7
1) 아동학대의 개념 .....	7
2) 아동학대의 유형 .....	9
2.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및 특성 .....	12
1) 아동 요인 .....	12
2) 부모 요인 .....	13
3) 가정 및 사회적 문화 요인 .....	14
3. 신고의무제 .....	16
1)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	16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17
4. 선행연구 .....	19
III. 연구방법 .....	22

1. 연구 대상 .....	22
2. 연구 도구 .....	24
3. 연구 절차 .....	26
4. 자료 분석 .....	28
<b>IV. 연구결과 및 해석 .....</b>	<b>29</b>
1.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영아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 .....	29
1)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학대 인식 .....	29
2)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학대 인식 .....	31
3)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학대 인식 .....	33
4)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방임 인식 .....	36
2.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 .....	39
1) 영아교사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39
2)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사항 .....	42
3) 아동학대 신고의 필요성 여부 .....	44
4) 아동학대 규정 .....	46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	48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	49
<b>V. 논의 및 결론 .....</b>	<b>52</b>
1. 논의 .....	52
2. 결론 및 제언 .....	57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 .....	22
<표 2> 면담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성 .....	23
<표 3> 영아학대 유형에 따른 영아교사의 인식 .....	24
<표 4>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 측정 설문지 구성 .....	25
<표 5> 면담 질문 목록 .....	27
<표 6>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학대 인식 차이 검증 .....	30
<표 7>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학대 인식 차이 검증 .....	32
<표 8>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학대 인식 차이 검증 .....	34
<표 9>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방임 인식 차이 검증 .....	37
<표 10> 영아교사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40
<표 11>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 사항 .....	43
<표 12> 아동학대 신고의 필요성 .....	44
<표 13> 아동학대 규정 .....	47
<표 1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	48
<표 1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	50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경제적 성장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한 가족의 구조와 역할 또한 바뀌게 만들었다. 즉, 사회구조적으로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치열한 경쟁체계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은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가정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불안정은 가정의 위기를 만들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도 증가하여 가정 내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가장 많았고, 2010년에는 4,972명, 2011년에는 5,246명, 2012년에는 5,56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4).

가정 내의 아동학대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461건, 정서학대가 936건, 성학대가 278건, 방임이 1,713건으로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피해 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0세-2세 813건, 3세-5세 841건, 6세-8세 998건, 9세-11세 1,293건, 12세-14세 1,564건, 15세-17세 894건으로 12-14세 연령 아동이 가장 많았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그러나 2014년 보건복지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아동학대 증가율을 살펴보면 가장 적은 피해 아동분포를 보였던 0세-2세까지의 영아학대가 2010년의 530건에서 2012년에는 813건으로 타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보건복지부, 2014). 이러한 결과는 영아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아학대가 발생해도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영아는 신체 및 정신적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가해질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아동학대 피해 경험은 한 인간으로서 발달하고 성장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의 경험은 존중감과 정체성의 문제,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문제, 우울증, 낮은 학업성취도, 높은 자살충동 등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오현주, 2006). 학대받은 아동은 학대로 인해 심각한 신체·정서 장애를 가져오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며,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 세대 간 악순환의 문제를 초래한다(윤선오, 박복숙, 2011). 특히 아동발달의 초기인 영아기에 발생하는 학대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김현양, 2003) 학대의 정도의 따라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Freud와 같은 정신 분석학자는 인간 발달에서 초기 경험이 나중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간이 생후 일정 기간 내에서 외부의 자극이 작용하는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 일컫고, 결정적 시기에 얻어진 행동이 한평생 지속되어 가역성이 없다는 것은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조복희, 2011). 이러한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아동발달 초기인 영아기의 학대는 발달에 있어서 그 어느 시기보다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온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4)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는 2010년 1,348,729명에서

2013년 1,486,980명으로 13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0세-2세 영아들은 2010년의 686,256명에서 2013년에는 874,975명으로 약 18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4). 이는 맞벌이 가정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은 늘어나고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자녀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영아기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영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영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영아의 일상을 함께 하는 영아교사가 학대를 당하는 영아들의 빠른 발견과 조치를 취할 경우 학대를 받고 있는 영아들의 더 큰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아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 유치원 종사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아동복지법 제 25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는 스스로 보호를 요청하기 어려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전문가에게 더 무거운 책임의식을 부과한다는 의미가 있다(오현주, 200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특성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하며,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해마다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및 협력 사업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014년 9월부터 시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가 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기존 신고의무자 외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에게도 신고 의무가 확대 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미신고시에는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게 하는 등 대상자의 신고의무를 더욱 강화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그러나 실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꺼려하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최근에는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자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다루어진 아동학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을 다룬 연구(김지윤, 2000; 오현주, 2006; 윤선오·박복숙, 2011; 이미훈, 2013; 정진이, 2014; 채수영, 2007), 아동학대 실태 및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상민, 2008; 유정원, 2006; 이현순, 2014; 조미진, 2008)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김숙연, 2009; 김영옥, 2004; 김현양, 2003; 박순인, 2007; 서수정, 2001; 이정희, 2004; 장정애, 20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연구(박기선, 2008; 박동연 2012; 오현주, 2006; 윤선오·박복숙, 2011)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방향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선행 연구는 3세에서 5세의 유아들이나 18세 이전의 아동 전체를 다룬 연구가 많았고 2세 이하인 영아의 학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 대상도 대부분 유아교사나 어린이집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되었고 영아반을 담당한 영아교사를 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가 거듭될수록 영아학대는 증가하고 있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으로 인하여 부모 대신 어린이집의 영아교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영아자녀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학대받은 영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영아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와 학대 발견 당시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여 그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신고의무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영아학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영아교사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봄으로써 아동학대 방안 마련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아동학대 의무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영아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학대에 대한 인식은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연령, 교사의 영아보육 경력, 학력 수준, 자녀유무,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신고의무제에 대한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 1) 영아학대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영아학대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정의를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하여, 신고의무자에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 등이 포함된다.

## 3)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신고의무제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직무상 아동과 관련이 있는 자들을 신고의 의무자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4) 영아교사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맡은 담임교사를 뜻하며 영아반 담임교사와 원장을 겸직으로 하고 있는 원장도 본 논문에서는 영아교사의 의미에 포함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과 범위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으므로 한마디로 일관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대행동의 의도성 유무, 학대에 의한 가시적인 발달적 손상 유무 및 손상 부위, 학대의 빈도와 지속성 여부 등 몇 가지 기준에 따라(이순형, 2003)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먼저, 아동학대를 좁은 의미에서 보면 아동학대에 관한 초기의 논문을 쓴 Kempe(1962)는 피학대아 증후군(battered-baby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대상을 영아로 한정 하였고 학대의 유형도 신체적 구타만을 다루었다. 그가 말한 피학대아 증후군의 의미는 부모나 가정 위탁 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 피학대아 증후군 즉 아동학대는 ‘부모나 양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의해 그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을 뜻한다(이배근, 2002; 박숙인, 2007에서 재인용).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의 아동학대는 다양한 학자가 정의를 내리고 있다. Fontana(1970)는 ‘어린이의 잠재되어 있는 발달이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억압당하게 되는 모든 부적절한 처우라고 정의하였다(강선영, 2010). Gill(1971)은 아동학대를 ‘아동들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

하거나, 학대 또는 방임 행위나 이유에 의해 아동들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개인, 시설 및 사회일반에 의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라고 정의 하였다(박숙인, 2007).

이외에도 장정애(2013)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성적의 모든 측면에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실질적인 해와 잠재적인 가혹, 폭력행위 및 방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후대응 적이 아닌 사전 예방적 측면이 강조 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넓은 의미의 학대란 아동의 성기를 포함한 신체 영역에 손상을 가하는 행동을 포함한 방임은 물론 사회제도까지 포함하여 의도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아동의 발달적 손상을 야기하고 있거나 앞으로 야기하여 아동의 전인적 복지를 저해하는 모든 행동과 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이소희, 2002: 이미훈, 2013에서 재인용). 이처럼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는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좁은 의미의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방임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은 학대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아동학대의 의미를 여러 나라에서도 정의내리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학대 및 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18세 이하의 아동이 위협하는 환경 하에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 성적학대, 방임 또는 부적절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Nelaon, 1984: 윤혜진, 2008에서 재인용). 또한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법 시안에 의하면 '아동학대와 방임이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또는 복지 상태에 위해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숙인, 2007).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성적으로 가혹한 처사, 성적 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로서 그 결과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

나 그러한 가능성을 초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윤혜진, 2008), 아동에게 가해진 실제적인 해 이외에 잠재적인 해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표명하고 있다(이순형, 2003).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행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또한 아동복지법 제 29조에는 아동학대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는 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를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이미향, 2011).

이상에서와 살펴본 것 같이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아동학대는 해가 거듭할수록 학대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학대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학대 유형에만 학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적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함시킨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 2) 아동학대의 유형

2014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행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영유아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히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02). 신체적 학대는 뺨을 때리는 행위부터 물건을 던져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까지 성인의 생각을 고집하기 위해 영유아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주기적으로 입히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손상의 범위는 신체의 어느 부위이건 때려서 생긴 조직손상을 포함하고, 조직손상에는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등이 있다. 기능의 손상에는 충격·관통·열 또는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할 수도 으며 훈육으로 시작한 체벌이 영유아의 반응에 따라 학대로 변할 수도 있으며 훈육의 한 종류인 체벌과 학대간의 분명한 구별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서정화, 2002).

##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에 일반인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서정화, 2002). 정서적 학대란 정신적 학대 혹은 심리적 학대라고도 불리우며 영유아의 심리와 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박숙인, 2007). 또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영유아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예로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식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를 한다거나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영유아가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영유아를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하는 행위 등이 모두 정서적 학대 행위의 예로 들 수 있다(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2).

### (3) 성적학대

성적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영유아와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가족 내 성적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적학대는 아동과 안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의 성적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영유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2).

성적학대는 부모나 성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인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성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사회적 금기에 위배되는 성적 활동에게 개입시키는 것을 포함한다(이순형, 2003). 성적학대에는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 성기 삽입·성적 접촉·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등을 포함한다(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2).

### (4) 방임

방임은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29조 제 4호). 방임은 양육에 있어서 적절히 행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하는 소극적 형태의 학대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충분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이다(이시연, 2000).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

다(중앙아동예방센터, 2013).

아동의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성적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기타 유해한 환경에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로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방임의 형태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서적 방임은 아동에게 무신경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불안, 위축, 산만, 분노 등의 정서를 조장하여 정서발달을 위협하는 상태를 말한다(이순현, 2003).

## 2. 아동학대의 발생 요인 및 특성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가난 및 가정 내의 문제점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복잡하며 다양한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체로 그 요인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요인

아동은 학대에 책임이 없다. 그러나 학대가 나타나는 유아의 공통적인 어떠한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학대가 나타나는 유아의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기질, 원하지 않은 출생과 성, 미숙아, 장애 및 발달지체 등을 꼽는다(이순현, 2003).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정적일 수 있는 경향이 높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신체적 질병이나 만성적 장애, 정신지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을 보살피는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오진석, 2011).

학대부모 학대받는 영유아 중에는 미숙아 혹은 기형아이거나 만 혹은 급성

질환 등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운동 및 언어 발달이 늦거나 정서적으로 자신감 결여, 무반응, 적대적 행위, 고집, 심하게 보채고 밤에 잠을 잘 자지 않거나 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의 요인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박상주, 2004). 특히 못생긴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늘고 있고(한지숙, 2003) 장애아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부가적인 에너지가 요구되므로 가족의 평형이 깨지기 쉽고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인해 영유아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윤종의, 1991; 한지숙, 2003에서 재인용).

## 2) 부모요인

아동학대와 연관성을 갖는 부모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부모와 가정에 주어진 스트레스 요인과 학대자의 심리적 특성과 성격 구조의 결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부모와 가정에 주어진 스트레스 요인으로 아동학대 원인을 보자면, 가족들끼리의 갈등, 경제적 곤란, 남편의 직업전환에 따른 갈등, 건강 문제가 심할수록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진현희, 1993; 오은영, 2013에서 재인용).

한 부모 가정과 같은 결손가족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부모의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 만일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아동양육에서 방임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즉, 부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긴장이 아동학대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오진석, 201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유형 중 한 부모 가정이 전체의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모가족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방임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밝혀, 한 부모 요인과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부모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아동을 과잉보호 혹은 유기를 하기도 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와 방법은 부모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김경숙, 2009).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모들은 영유아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쉽게 영유아를 학대할 수 있다. 부모의 나이가 어리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건전한 가족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박상주, 2014). 또한 부모들은 일상적인 기능과 만족감을 위해 이웃이나 친지들이 제공하는 감정적 지지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불만족스러운 부모는 양육자의 역할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올바른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아동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부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동을 학대하게 된다(박영주, 2003).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의 1/3이 학대부모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 밖에 정신병, 우울, 약물중독 등도 부모의 학대요인으로 들고 있다(이순형, 2003).

### 3) 사회적 문화 요인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체벌에 대해 허용하고,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문화 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아동에게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이 간접적인 아동학대의 발생을 제공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한연숙, 2007).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자녀양육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여자 특히 어머니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성들이 고등교육, 전문교육, 자기성취, 사회활동 등에 관한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김경숙, 2009). 이처럼 여성들의 진취적인 욕구는 여성에게 일임한 자녀양육문제가 큰 부담으로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부담은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영역은 아동과 부모가 거주하는 사회의 문화나 신념, 폭력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며, 이에 속하는 용인으로는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에서는 체벌이 아동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훈육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감정을 실어 매를 때려도 그것이 교육을 위한 메시지 결코 학대 차원의 구타로 여기지 않아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오진석, 2011).

가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상호 작용이 약한 경우이다. 그리고 미성년 가족, 편부모 가족, 이혼 및 재혼 가족 등 가족이 특수한 구조를 가질 때 양육지식에 대한 지식 부족과 높은 스트레스,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여 등으로 인해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되어 있을 때 역시 영유아 학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박상주, 2014).

사회적 문화 요인으로는 체벌에 대한 허용성, 영유아에 대한 태도, 가족의 사회적 고립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는 영유아의 훈육을 위해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이순형, 2013).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에 있어서는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오랜 관습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인식이 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현양, 2003). 아동학대는 단일 위험 요인으로만 이어나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들의 특성들이 작용하여 발생된다. 그러므로 다중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의 원인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오은영, 2013).

### 3. 신고의무제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의 특성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의 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무력하고 미성숙한 아동의 특성 때문에 스스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므로 사회의 타구성원이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12).

미국은 피학대·방임 아동을 포함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보호 정책과 서비스에는 오래 전부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960년 중반 이후 아동학대와 관련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1974년 ‘아동학대 방지 및 치유법’을 제정하고, 국립 아동학대 방임센터를 설립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장정애, 2013).

영국은 아동학대 신고제가 있으나 신고의무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전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의무가 있을 뿐이다.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의 강제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신고의무자는 보건, 교육과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고 ‘가족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직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였다(윤혜미, 2004).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제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직무상 아동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신고의무자들을 규정하여 아동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두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하여 강조하고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한 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

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최미영, 2007).

##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2009)에 의하면, 신고의무자를 둔 이유를 ‘학대 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의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무력하고 미성숙한 아동의 특성 때문에 스스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므로 사회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였다(장정애, 20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의 특성아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어서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좋은 위치에 있다.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 종사자 등 세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미영, 2007).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를 살펴보면 ①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②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④「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⑥「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⑦「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⑧「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⑨「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⑩「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⑪「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⑫「영유아보육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⑬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⑮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⑯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⑰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⑱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⑲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⑳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㉒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㉓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㉔ 「아동복지법」 제37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보면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의무제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보면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신고의무제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 4.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요인들과 관련 있는 선행연구로는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나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나 교사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부모나 교사가 학대에 대한 자각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지윤(2000)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집 교사는 모든 아동학대 유형에서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 교사의 직위(교사, 주임, 원감, 원장)가 더 높을수록 학대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더 많았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식은 어린이집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위가 더 높을수록 신고의식 비율이 더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다룬 이미훈(2013)의 연구에 의하면 학대행위로 인식하는 정도는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이 부모의 평균보다 높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 및 기관에 대한 인식 또한 부모보다 어린이집 교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은 그만큼 예년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현주(2006)의 유아교사의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결과에서는 유아교사의 학대발견 빈도와 신고제도에 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학대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자인 동시에 신고의 무자인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프로그램개발과 신고의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둘째,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대처방법, 학대유형, 학대 예방, 교육의 실태 등 얼마만큼 학대의 원인과 예방을 인지하고 있는 지 밝힌 연구들이다. 김현양(2003)은 어린이집에

서 아동의 학대발생 원인에 있어 온종일 ‘아동과 교사가 함께 있어서’라고 응답했으며 보육과정 중 교사로부터 학대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 증상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아동의 연령에 따른 훈육방법을 개발하는 교사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온종일 담임교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보조교사 제도를 활성화 하여 교사의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박숙인(2007)은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적 대안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정예방의 중요성, 보육 및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및 폭력 교육이 신설로 추가되고, 법적·제도적 측면의 강화에서 신고체계의 일원화로 아동학대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 몇 가지 예방 방안에 대해 강조 하였다. 송준화(2007)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보육교사의 예방교육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학대에 대한 심각성, 신고 의도는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최승혜(2007)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관련 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도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학대의 예방교육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예방교육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보육교사들의 신고 의도는 높아 지므로 장기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이수과목을 제도화하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신고방법, 신고 후 처리 등에 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세미나의 의무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하였다.

윤혜진(2008)의 아동학대와 보육교사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의 아동학

대 예방대책에 관한 일반적 만족도, 홍보·교육에 대한 만족도 모두 보통 수준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인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아동·부모교육 실시,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 보육교사 개입의 필요성, 다양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업의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아동학대 신고관련 홍보사업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2세 이하의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영아반 담임교사 2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아교사들에게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고 답변 성실도가 양호한 설문지만을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264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 하였다.

<표 1>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 (N=264)

특성	구 분	n	%
교사연령	29세 이하	79	29.92
	30~39세	86	32.58
	40~49세	77	29.17
	50세 이상	22	8.33
교사경력	1년 미만	37	13.75
	1~3년	125	46.47
	4~6년	54	20.07
	7~9년	28	10.41
	10년 이상	25	9.29
자녀유무	있다	142	53.18
	없다	125	46.82
교사학력	고졸 및 기타	52	19.40
	전문대학	88	32.84
	4년제 대학교 이상	128	47.8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4	20.15
	법인	20	7.46
	가정	113	42.16
	민간 및 기타	81	30.22
합계		264	100.0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264명을 대상으로 배경변인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영아교사의 연령은 30-39세 86명(32.58%), 29세 이하 79명(29.92%), 40-49세 77명(29.17%), 50세 이상 22명(8.33%) 순으로 30-39세 교사가 가장 많았다. 교사의 경력은 1-3년이 125명(46.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6년 54명(20.07%), 1년 미만 37명(13.75%), 7-9년 28명(10.41%), 10년 이상 25명(9.29%)순이었다. 교사의 자녀유무는 142명(53.18%)의 교사가 자녀가 있었고, 125명(46.82%)의 교사가 자녀가 없었다. 교사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가 128명(47.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유형은 가정 113명(42.16%), 민간 및 기타 81명(30.22%), 국·공립 54명(20.15%), 법인 20명(7.46%)이었다.

또한, 설문지의 응답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 면담을 사용하였는데 면담은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 중 어린이집 유형, 자녀유무, 학력 등 다양한 상황의 교사들을 선별하여 직접 및 전화 면담을 허락한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성

교사명	어린이집 유형	나이	영아반 경력	교육정도	자녀유무
A교사	국공립	35	3년 6개월	대학원 졸업	없음
B교사	민간	34	6년 6개월	고등학교 졸업	없음
C교사	가정	44	4년 6개월	대학교 졸업	있음
D교사	가정	39	9년	고등학교 졸업	있음
E교사	국공립	34	1년 6개월	대학교 졸업	없음
F교사	법인	25	1년 7개월	전문대 졸업	없음
G교사	민간	27	2년	전문대 졸업	없음
H교사	민간	33	5년 6개월	고등학교 졸업	있음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영아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영아학대에 대한 영아교사 인식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영아학대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김지윤(2000)이 Karir(1999)과 김정준(1987), 이지숙(1997)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영아의 기준에 맞춰 수정·보완을 하였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영아학대의 유형에 따른 영아교사 인식의 전체 신뢰도는 .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하위변인 신체적 학대 신뢰도는 .74, 정서적 학대 신뢰도는 .87, 성적 학대 신뢰도는 .56, 방임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표 3> 영아학대의 유형에 따른 영아교사 인식

학대 유형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
신체적 학대	4	3,6,7,13	.74
정서적 학대	5	5,12,15,16,18	.87
성적학대	3	2,10,17	.55
방임	6	1,4,8,9,11,14	.81
계	18		.91

이 척도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의 4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영아교사 인식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영아교사 인식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 방

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분하여 1, 2, 3, 4, 5의 점수로 배점하였다.

문항은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영아학대라고 느낀 정도를 1점에서 5점 중 하나를 골라 응답하게 되어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 2)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 인식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최미영(2007)이 구성한 설문지를 본 논문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신고의무제에 대한 정의적 측면과 학대 규정에 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아동 학대 발견 시 조치사항, 아동학대 신고의 필요성 여부, 아동학대 규정 및 예방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 측정 설문지 구성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고의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4	1~4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사항	3	5,6,7,9
아동학대 신고의 필요성 여부	3	8,10,18
아동학대의 규정 및 예방 대책	8	11~17,19
계	19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서울, 경기 일대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3명, 법인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1명, 가정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3명, 민간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3명으로 총 10명에게 2014년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주일 간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로 실시하였다. 그 후 각 연구 도구의 문항에서 교사들이 설문 항목에 그 의미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기록해준 것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그 의미를 설명하고, 교사들과 협의하여 애매모호한 질문을 명확하게 하는 수정을 거친 후 보완하여 유아 교육 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아 최종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고, 면담자료도 함께 검토 받아 완성하였다.

#### 2) 본 조사

본 조사를 위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서울,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영아교사 300명에게 2014년 5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 전화 등의 경로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 및 개인에게 우편, 직접 방문, E-mail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만 2세 이하 반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는 약 10주간 실시되었다.

면담은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하여 현장 면담에서는 오디오 녹음, 전화 면담에서는 녹취 등의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면담의 기록방법은 면담하는 과정 중 녹음 및 녹취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하였으며 각

교사들과 30분씩 가량의 면담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의 질문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면담 질문목록

<b>영아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면담 질문 목록</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언론에서 학대당한 영아들에 대해 보도할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li> <li>2. 실제로 영아학대를 당한 영아를 보신 적이 있나요?</li> <li>3. 만약 학대를 당한 영아를 보셨다면 영아의 상태는 어땠나요?</li> <li>4. 영아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대는 어떤 학대라고 생각하시나요?</li> <li>5. 영아들의 학대가 왜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li> <li>6. 선생님은 영아학대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li> <li>7. 부모가 영아인 자녀를 사랑하지만 관심이 바빠서 무신경한 모습을 볼 때 그걸 학대라고 생각하시나요?</li> </ol>
<b>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면담 질문 목록</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생님은 신고의무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li> <li>2. 신고의무제의 법 조항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계신가요?</li> <li>2. 실제 학대 받은 아동을 신고하신 적이 있나요?</li> <li>3. 왜 선뜻 교사들이 학대를 발견 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li> <li>4.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li> <li>5. 아동학대 중 신고가 용이한 학대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li> <li>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ol>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 통계처리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인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 영유아학대 심각성 인식,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 인식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의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영유아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과,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셋 이상의 하위집단간일 경우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증(duncan)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설문지 외의 좀 더 구체적인 영아교사의 학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영아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영아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6과 같다.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영아교사의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교사연령( $F=.51, p>.05$ ), 교사경력( $F=.92, p>.05$ ), 자녀유무( $F=.99, p>.05$ )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사학력( $F=4.40, p<.05$ )이 높을수록,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F=4.29, p<.05$ )이 가정, 국공립, 법인, 민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교사학력에서는 4년제 대학 이상( $M=4.05$ ), 전문대학( $M=4.00$ ), 고졸 및 기타( $M=3.68$ )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4.40, p<.01$ ).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에서는 가정( $M=4.07$ ), 국·공립( $M=3.97$ ), 민간 및 기타( $M=3.91$ ), 법인( $M=3.53$ )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4.29, p<.01$ ). 이를 Duncan 사후 검증을 한 결과 교사의 학력 고졸 및 기타와 전문대학에서 차이를 보였고, 고졸 및 기타와 4년제 대학교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에서 법인과 국공립, 법인과 가정, 법인과 민간 및 기타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

다.

<표 6>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학대 인식 차이 검증 (N=264)

		<i>N</i>	<i>M</i>	<i>SD</i>	<i>F</i>	<i>DMR</i>
교사연령	29세 이하	79	3.92	.65	.51	
	30~39세	86	3.94	.62		
	40~49세	77	4.03	.69		
	50세 이상	22	4.05	.68		
교사경력	1년미만	37	3.96	.60	.92	
	1~3년	125	3.91	.69		
	4~6년	54	4.03	.62		
	7~9년	28	3.91	.75		
	10년이상	25	4.16	.53		
자녀유무	있다	142	4.00	.67	.99	
	없다	125	3.92	.63		
교사학력	고졸 및 기타	52	3.68	.65	4.40**	a
	전문대학	88	4.00	.62		b
	4년제 대학교 이상	128	4.05	.66		b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4	3.97	.61	4.29**	b
	법인	20	3.53	.64		a
	가정	113	4.07	.65		b
	민간 및 기타	81	3.91	.65		b

\*\* $p < .01$

다음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영아교사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약 30분간 면담을 진행한 내용이다.

저는 경력이 남들처럼 10년 이상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있었고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 모두 다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들 맡으면서 엄마가 무관심하다고 느낀 적은 있었지만 이 조그만 아기들이 집에서 맞고 왔다거나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팔이나 다리 같은 곳에 피멍이 들었거나 맞았다고 의심이 되면 전 그 즉시 상처부위에 사진을 다 찍어놓고 경찰서나 아동학대기관에 신고 할 겁니다,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2014. 9. 15. C교사와의 면담)

C교사는 지금까지 신체적 학대를 당한 영아를 본 적은 없지만 만약 자신이 맡은 영아가 신체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그 증상여부를 증거로 남기고 바로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 2)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7과 같다.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영아교사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교사연령( $F=1.93, p>.05$ ), 교사경력( $F=0.88, p>.05$ ), 자녀유무( $F=1.82, p>.05$ ), 교사학력( $F=1.41, p>.05$ )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F=3.10, p<.05$ )이 가정, 국공립, 법인, 민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가정( $M=2.98$ ), 국·공립( $M=2.80$ ), 법인( $M=2.74$ ), 민간 및 기타( $M=2.66$ )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F=3.10, p<.05$ ). 이를 Duncan 사후 검증을 한 결과 국·공립과 민간 및 기타에서 차이를 보였고, 가정과 민간 및 기타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7>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학대 인식 차이 검증 (N=264)

		<i>N</i>	<i>M</i>	<i>SD</i>	<i>F</i>	<i>DMR</i>
교사연령	29세 이하	79	2.70	.65	1.93	
	30~39세	86	2.81	.74		
	40~49세	77	2.92	.80		
	50세 이상	22	3.04	.78		
교사경력	1년 미만	37	2.78	.80	.88	
	1~3년	125	2.79	.77		
	4~6년	54	2.81	.62		
	7~9년	28	2.86	.77		
	10년 이상	25	3.07	.66		
자녀유무	있다	142	2.92	.78	1.82	
	없다	125	2.71	.67		
교사학력	고졸 및 기타	52	2.68	.74	1.41	
	전문대학	88	2.90	.75		
	4년제 대학교	128	2.84	.74		
	이상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4	2.80	.60	3.10*	b
	법인	20	2.74	.66		ab
어린이집 유형	가정	113	2.98	.82	3.10*	b
	민간 및 기타	81	2.66	.68		a

\* $p<.05$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영아교사와 진행된 면담은 다음과 같다.

작년에 저희반 아이 중 한 명이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반은 4살 반(만2세)이었고 학기 후반이라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기표현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학기 중반에는 어쩌다 한번 씩 그래서 제가 가끔가끔 놀랐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랑 놀이할 때 "새끼야", "정신 나갔냐?", "죽는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몇 번 혼내주고 그러긴 했었는데 학기 후반쯤 되더니 아이가 놀이할 때 흥분을 하면 번번이 그런 말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담을 했고 부모님은 엄청 깜짝 놀라시면서 집에서는 그럴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하시고,, 실은 그 애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자주 그런 말들을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 아닌가요? 또 모르죠, 그걸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사용했을 지는요,, 의심은 되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제가 직접 그 아이 집에서 관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저 걱정만 하다 일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2014. 9. 1. B교사와의 면담)

B교사는 반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 반 아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친구들에게 어떻게 언어사용을 하였는지 주의 깊게 듣고 정서적 학대를 의심하였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보니 의심을 하였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어려워하였다.

### 3)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8과 같다.

아래의 표 8에서와 같이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적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는 교사연령( $F=1.83, p>.05$ ), 교사경력( $F=1.25, p>.05$ ), 교사학력( $F=2.20, p>.05$ )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가 있는 교사,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이 가정, 국공립, 법인, 민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8>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학대 인식 차이 검증 (N=264)

		N	M	SD	F	DMR
교사연령	22~29세	79	3.28	.65	1.83	
	30~39세	86	3.38	.63		
	40~49세	77	3.42	.74		
	50~62세	22	3.65	.77		
교사경력	1년 미만	37	3.35	.63	1.25	
	1~3년	125	3.31	.70		
	4~6년	54	3.48	.67		
	7~9년	28	3.38	.68		
	10년 이상	25	3.60	.69		
자녀유무	있다	142	3.46	.72	1.99*	
	없다	125	3.30	.63		
교사학력	고졸 및 기타	52	3.42	.65	2.20	
	전문대학	88	3.43	.69		
	4년제 대학교 이상	128	3.21	.69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4	3.41	.56	1.76**	ab
	법인	20	3.13	.55		a
	가정	113	3.52	.76		b
	민간 및 기타	81	3.23	.63		ab

\* $p<.05$ , \*\* $p<.01$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자녀유무에서는 있다( $M=3.46$ ), 없다( $M=3.30$ )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0.48, p<.05$ ). 현재 근무하

는 어린이집 유형에서는 가정( $M=3.52$ ), 국·공립( $M=3.41$ ), 민간 및 기타( $M=3.23$ ), 법인( $M=3.13$ )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10, p<.01$ ). 이를 Duncan의 방식으로 사후 검증한 결과 법인과 가정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성적학대에 대해 영아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영아교사들은 성적학대를 가장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적학대가 제일 심각하지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나한테 맞을 건지, 무관심 받을 건지, 성적으로 학대를 당할 건지, 아니면 내 정서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학대를 받을 건지 이 4가지 중에 학대를 한 가지만 받지 않아도 된다면 선생님은 어떤 학대를 안 받으시겠어요? 전 당연히 성적학대가 제일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싫은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제 몸을 누가 만지고 학대한다고 생각하면.. 아휴..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 후 유증 또한 성적학대가 제일 심각할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는 딸이 있는데 제 딸이 그런 학대를 어디선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D교사에게 다음 질문으로 성적학대를 본 경험이 있는 지 어떻게 발견하였는 지에 대해 묻은 결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성적학대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미술치료사이신데 성적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아이의 그림 속에 옷을 입지 않는다거나 유독 남자 옷만 그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경

우 성적 학대를 의심하라고는 했는데 실제 제가 저의 아이들 그림 속에서 발견한 적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아다 보니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건 당연하고요, 영아들이 성적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고... 성적학대를 당하기에는 정말 너무 어린 나이 아닌가요?

(2014. 9.7. D교사와의 면담)

D교사는 성적학대는 그림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지만 영아는 너무 어린시기이기에 그림이 표현되지 않아 쉽게 발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가 생길 수 있는 비율은 너무 어린시기이기 때문에 타 학대율에 비해 적다고 생각하였다.

#### 4)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방임에 대한 인식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방임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9와 같다. 아래 표 9에서와 같이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방임 인식 차이는 교사연령( $F=1.081, p>.05$ ), 자녀유무( $F=.953, p>.05$ ),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F=1.725, p>.05$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사경력, 교사학력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교사경력에서는 4-6년( $M=4.01$ ), 10년 이상( $M=4.00$ ), 1년 미만( $M=3.96$ ), 7-9년( $M=3.85$ ), 1-3년( $M=3.70$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60, p<.05$ ). 교사학력에서는 4년제 대학교 이상( $M=3.97$ ), 전문대학( $M=3.84$ ), 고졸 및 기타( $M=3.52$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7.79, p<.001$ ). 이를 Duncan의 방식으로 사후 검증한 결과 1년-3년과 4-6년, 1-3년과 10년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고, 고졸 및 기타와 전문대학, 고졸 및 기타와 4년제 대학교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9>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방임 인식 차이 검증 (N=264)

		<i>N</i>	<i>M</i>	<i>SD</i>	<i>F</i>	<i>DMR</i>
교사연령	22~29세	79	3.74	.64	1.08	
	30~39세	86	3.88	.72		
	40~49세	77	3.88	.74		
	50~62세	22	4.00	.69		
교사경력	1년 미만	37	3.96	.59	2.60*	ab
	1~3년	125	3.70	.75		a
	4~6년	54	4.01	.62		b
	7~9년	28	3.85	.71		ab
	10년 이상	25	4.00	.73		b
자녀유무	있다	142	3.88	.75	.95	
	없다	125	3.80	.65		
교사학력	고졸 및 기타	52	3.52	.67	7.79***	a
	전문대학	88	3.84	.67		b
	4년제 대학교 이상	121	3.97	.71		b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4	3.85	.67	2.19	
	법인	20	3.53	.65		
	가정	113	3.94	.73		
	민간 및 기타	81	3.78	.68		

\* $p < .05$ , \*\*\* $p < .001$

결으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방임에 대해 영아교사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웃도 제대로 입지 않고 오고 쪽지편지를 보냈어도 답장도 없고 이론적이야 그 아이가 방임이라 생각되지만 실제 그게 진짜 학대인가 싶어요. 부모가 아이한테 무관심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바쁘고 힘들면 또 오죽 저럴까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직 전 결혼을 안했지만 막상 아이를 키우면

내가 바빠서 아이한테 신경을 잘 못 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방임으로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이상하게 엄마가 자기 데리러 오시면 우리 초롱반(만2세반) 아이들이 좋아서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방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마한테 학대당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엄마를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방임의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네요,

(2014. 9. 1, B교사와의 면담)

영아학대는 다 안 좋죠, 그 아기들이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그런데 방임은 그야말로 무관심인데 4살(우리나라 나이)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아주 갓난아기들 같은 영영아들은 무관심을 받았다고 상처를 받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물론 4살(우리나라 나이)애들이야 당연히 상처를 받겠지만,, 그래도 신체적학대나 성적학대 같은 학대가 훨씬 아이의 발달상 안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2014. 9. 3, G교사와의 면담)

전날 엄마한테 혼이 났는데 다리 부분이 멍이 들어서 학대당한 줄 알고 걱정했었는데 그 때 딱 하루뿐이여서 "학대당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딱 하루뿐이여서 말이지요, 그런데 개가 유독 다른 애들보다 산만하고 특하면 울면서 표현한다거나 친구들과도 잘 놀이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던 아이거든요, 몇 번 부모님과 상담을 하길 원한다고 요청했었는데 상담약속 날도 그 부모님은 지켜주시지 않고 전화 상담이라도 할까하면 전화도 잘 받지 않으시고,,만약 지난번처럼 몸에 멍이 들거나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제가 학대라고 확신하고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 아이 어머님처럼 "그런 무관심들이 방임이니 학대 당한거

야.” 라고 하면 왠지 애매모호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하여튼 좀 방임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4. 9. 14. F교사와의 면담)

영아교사들은 방임이라는 의미는 알지만 방임의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표현하였고 더불어 방임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학대가 아니라 판단하기 다소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영아교사들의 영아학대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높았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는 실제 현장에서 찾기 어려웠지만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종종 의심되는 영아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대라는 명확한 구분이 없어 그조차도 학대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2.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사항, 아동학대 신고의 필요성 여부, 아동학대의 규정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

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영아교사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N=264)

특성	구분	n	%
학대신고제 인식정도	알고 있다	223	84.76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39	14.50
	모른다	2	.74
신고의무제 개정 인지	알고 있다.	239	90.71
	모른다	25	9.29
학대 신고기관	경찰서나 파출소 (112)	26	9.67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	215	81.78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관	23	8.55
아동학대 정의	잘 알고 있다	144	53.67
	알고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	115	44.40
	모른다	5	1.93
신고의무자 규정	잘 알고 있다	147	55.17
	알고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	107	41.00
	모른다	10	3.83
학대행위규정	잘 알고 있다	91	33.20
	알고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	161	62.16
	모른다	12	4.63
학대자 처벌 규정	잘 알고 있다	52	18.53
	알고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	178	68.73
	모른다	33	12.74
학대 신고절차	잘 알고 있다	134	50.00
	알고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	118	45.38
	모른다	12	4.62

위의 표 10에서와 같이 영아교사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 전체 응답 대상 중 학제신고제 인식을 알고 있는 교사가 223명(84.76%)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제 개정 인지 또한 알고 있는 교사가 239명(90.71%), 모르겠다고 답한 교사가 25명(9.29%)으로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교사가 월

등히 많았으며, 학대 신고기관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1391)가 215명(81.78%)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제의 내용 중 아동학대 정의에 대해 알고 있는 교사가 144명(53.67%)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 규정도 잘 알고 있는 교사가 147명(55.17%)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학대 행위 규정은 알고 있으나 잘 모른다고 161명(62.16%)의 교사가 가장 많이 답하였고 학대자 처벌규정도 알고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한 교사가 178명(68.73%)으로 가장 많았다. 학대 신고절차는 잘 알고 있는 교사가 134명(50.00%)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해 영아교사들이 알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고 먼저, 아동학대의 정의와 실제 24개의 직업군을 가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는 우리 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제가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신고의무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신고의무자가 24개의 직업군이라니...(멋쩍게 웃으면서) 소방관, 경찰관.. 또 누가 있지?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 절차나 법정 조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경찰서나 1391에 신고하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었나요? 특례법? 글썄요.. 아동복지법은 들어봤는데 특례법은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잘 몰랐어요. 전 법에 나와 있는 신고의무제는 잘 모르구요, 아동학대 연수 같은

거 받을 때 내가 어린이집 교사이기 때문에 신고의무자라는 거 그런 것 밖에 몰라요. 그런 것 까지 근데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나요? 어차피 아동 학대를 발견하면 경찰서나 1391같은 곳으로 정확히 신고를 하기만 하대 되는 거잖아요.

(2014. 9. 8. H교사와의 면담)

면담한 영아교사들은 신고기관 번호, 신고의무제가 무엇인지, 교사인 본인이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의 구체적인 법 조항 및 처벌 규정과 같은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걸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 2)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사항

어린이집 영아교사가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아래의 표 11에서와 같이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사항 전체 응답자 중 학대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한 교사가 219명(89.81%)으로 월등히 많았다.

학대사례로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한 교사들의 응답 중에서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55% 이상이 가끔(51.00%) 혹은 자주(4.26%)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가끔(53.33%) 혹은 자주(6.67%)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방임에 대해서는 54% 이상이 가끔(48.89%) 혹은 자주(6.67%)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적학대에 대해서는 95% 이상이 전혀 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학대사례를 보았는데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된 신고여부는 ‘아니오’가 37명(81.40%)으로 ‘예’로 응답한 8명(18.60%)보다 많았다.

앞으로 학대 사례를 볼 경우 신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는 246명(93.21%), 정서적 학대는 196명(74.17%), 성적학대는 246명(93.18%), 방임은 181명(68.85%)이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표 11>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사항 (N=264)

특 성	구 분	n	%
학대사례 의심	예	45	10.19
	아니오	219	89.81
신체적 학대	전혀 보지 못했다	19	44.68
	가끔 본 적이 있다	24	51.06
	자주 보았다.	2	4.26
정서적 학대	전혀 보지 못했다	18	40.00
	가끔 본 적이 있다	24	53.33
	자주 보았다.	3	6.67
성적학대	전혀 보지 못했다	43	95.56
	가끔 본 적이 있다	2	4.44
	방임	전혀 보지 못했다	20
가끔 본 적이 있다		22	48.89
자주 보았다.		3	6.67
학대사례 신고 여부	예	8	18.60
	아니오	37	81.40
앞으로 신체적 학대	예	246	93.21
	생각해 보겠다.	18	6.79
정서적 학대	예	196	74.14
	아니오	3	1.14
성적학대	예	246	93.18
	생각해 보겠다	18	6.82
신고 여부	예	181	68.85
	아니오	2	.77
	생각해 보겠다.	81	30.38

### 3) 아동학대 신고의 필요성

학대 아동을 발견했을 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아동학대 신고의 필요성 (N=264)

특 성	구 분	n	%
신고가 필요한 이유	교사나 교육기관의 힘만으로는 개입 및 치료가 어려우므로	44	16.98
	아동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해야 하므로	89	33.58
	더 이상의 학대는 막아야 하므로	66	24.91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63	23.77
	기타	2	.75
신고 안한 이유	훈육과 학대와의 명확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26	69.44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	5.56
	학부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	5.56
	발견능력이 없고 업무로 인하여 바쁘기 때문에	3	8.33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	11.11
신고율이 낮은 이유	법적인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47	17.76
	신변노출에 대한 거부감	86	32.82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10	3.47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어서	117	44.79
	기타	4	1.16

위의 표 12에서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아동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해야 하기 위해 89명(33.58%), 더 이상의 학대는 막아야 하므로 66명(24.91%),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63명(23.77%), 교사나 교육기관의 힘만으로는 개입 및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44명(16.985), 기타 2명(0.755)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훈육과 학대와의 명확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는 26명(69.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이유들은 빈도수가 적었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어서 117명(44.795)으로 가장 많았고, 신변노출에 대한 거부감 86명(32.82%), 법적인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47명(17.76%),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10명(3.47%), 기타 4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실제 일어나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진행된 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데도 토요일 보육을 시킨다거나 소풍날인지 무슨 날인지 잘 모르고 애를 그냥 보낸다거나 또 애가 양말에 구멍이 났는데도 그냥 신겨 보낸다든지 아무튼 무관심한 부모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아 맞다, 아파도 보내는 엄마들도 있어요, 직장 다니는 엄마는 이해가 되는데 직장도 안다니면서 동생 키우기 힘들다고 일부러 말기는 거죠, 이런 게 전 다 방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신고 못하는 이유는요 그런 것으로 신고하면 신고안할 부모들은 어디 있을 것이며 또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건~ 만약 신고했다면 경찰관 아저씨들도 아마 엄청 웃을 걸요? 이런 걸로 신고한다고요

(2014. 9. 11, A교사와의 면담)

신체적 학대를 당했거나 성적학대를 우리 반 아이가 집에서 당했으면 전 반드시 신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9년 넘게 영아들을 보면서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 당한 영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확실치도 않은 애들을 방임이다 정서적 학대다 하면서 신고하면 아마 우리 반 부모님들은 저를 오히려 신고할 게 뻔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까다롭긴 또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아마 저를 신고하고도 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요..

(2014. 9. 7. D교사와의 면담)

영아교사들은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학부모에 대한 두려움,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 지 그렇지 않은 지 타당성 여부 때문에 방임과 정서적 학대는 신고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 4) 아동학대의 규정

다음은 아동학대 규정에 관하여 질문한 내용이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아래의 표 13에서와 같이 아동학대를 발견할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는 전체 응답자(264명) 중 174명(66.41%)이 찬성하였고, 90명(33.59%)이 반대하였다.

그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174명의 응답자 중 처벌정도는 신고의무제에 대한 재교육실시 109명(61.33%)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으로 교사자격 정지 38명(22.10%), 교사자격 박탈 14명(8.84%), 벌금형 13명(7.7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90명의 응답자 중 처벌에 반대하는 이유는 '신

고할 수 없었던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므로' 라고 답한 응답자가 70명(80.70%)으로 가장 많았다.

<표 13> 아동학대 규정 (N=264)

특성	구분	n	%
미신고 처벌 찬성여부	그렇다	174	66.41
	그렇지 않다	90	33.59
처벌정도	벌금형	13	7.73
	일시적으로 교사자격 정지	38	22.10
	교사 자격 박탈	14	8.84
	신고의무제에 대한 재교육실시	109	61.33
처벌 반대이유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므로	4	3.51
	신고할 수 없었던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므로	70	80.70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3	2.63
	기타	13	13.16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미신고 처벌 여부에 대해 자세히 듣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신고 시 처벌을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신고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굳이 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교사는 찾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타당하다 생각이 들지 않고요 만약 미신고 시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법 조항을 든다면 그건 교사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 이외에 모든 일반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 9. 14. F교사와 면담)

###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아래의 표 14에서와 같이 평가 전체 응답자 중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 보통이상 이라고 평가한 교사가 66% 이상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한 평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적절하다 128명(48.46%), 예방교육 횟수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101명(38.08%), 기타 24명(9.23%),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11명(4.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N=264)

특성	구 분	n	%
예방대책 적절성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14	5.30
	그렇지 않다	73	27.65
	보통이다	132	50.00
	그렇다	42	15.91
	매우 그렇다	3	1.14
예방교육 의무화 관련 견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적절하다.	128	48.46
	예방 교육 횟수를 좀 더 확대 했으면 좋겠다.	101	38.08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11	4.23
	기타	24	9.23

##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아래의 표 15에서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전체 응답자 중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88% 이상이다.

향후 예방 교육에 좀 더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학대 아동의 실제 사례를 보여준 후 학대발견 후 대처방법 164명(63.08%), 학대 부모의 상담방법이나 부모 교육 143명(55.00%),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116명(44.62%),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56명(21.54%) 순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을 위하여 사용되기에 적합한 매체로는 어린이집으로 전문가가 직접 내방한 강의 146명(55.94%)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 교육 장소로 찾아간 전문가 강의 77명(28.35%),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강의 30명(11.49%), 잡지나 책 등의 문자매체 7명(2.68%), 기타 4명(1.535) 순으로 나타났다.

예방정책 시급성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아동보호 정책 수립이 148명(55.94%)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70명(26.05%), 아동학대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양성 44명(16.86%), 기타 3명(1.15%)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활성화 방안은 신고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 177명(68.08%), 신고자 비밀보장 124명(47.69%), 신고시 즉각적인 개입 116명(44.625),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45명(17.31%),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변화 42명(16.15%), 기타 4명(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N=264)

특성	구 분	n	%
정부 차원에서 학대예방 자료 제공	전혀 그렇지 않다	2	.77
	그렇지 않다	4	1.54
	보통이다	24	9.23
	그렇다	136	51.54
	매우 그렇다	98	36.92
예방교육내용 (다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116	44.62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56	21.54
	학대 아동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학대 발견 후 대처방법	164	63.08
	학대 부모의 상담방법이나 부모 교육	143	55.00
예방교육 매체	잡지나 책 등의 문자매체	7	2.68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강의	30	11.49
	직접 교육 장소로 찾아간 전문가의 강의	77	28.35
	어린이집으로 전문가가 직접 내방한 강의	146	55.94
	기타	4	1.53
예방정책 시급성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아동보호정책 수립	148	55.94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70	26.05
	아동학대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양성	44	16.86
	기타	3	1.15
신고 활성화 방안 (다중)	신고자 비밀보장	124	47.69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	116	44.62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	177	68.08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변화	42	16.15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45	17.31
	기타	4	1.54

어린이집 영아교사들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를 하겠다는 의견은 높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확신, 신변노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신고율이 낮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아동보호정책 수립, 신고의 활성화 방안으로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체계 마련, 신고자 비밀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많은 교사들이 응답하였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영아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는 방안 마련과 아동학대 의무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영아학대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사의 연령, 경력, 자녀유무, 전공 학력,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학대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영아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학력과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성적학대에 대한 인식은 자녀유무,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방임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학력,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 교사학력은 영아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한 이현순(2014)의 연구결과에서 교사의 학력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또한 유아학대와 어린이집 신고제도

에 관해 연구한 오현주(2007)에서도 교사의 학력에 따라서 아동학대 인식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와도 대조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어린이집 교사는 아니었으나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의 인식을 다룬 이성혜(2007) 연구에서는 종사자들의 학력에 따라서 아동학대 인식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관련 전공 학력이 높을수록 종사자의 신체적 학대 인식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은 가정, 국·공립, 법인, 민간 및 기타 순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인식이 높게 나왔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는 김정자(2014)의 연구결과와 어린이집 유형 중 가정이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낮고 민간이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박유미(2012)의 연구결과를 보면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가정 어린이집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인식이 높았을 것이고,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던 민간 및 기타 어린이집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인식이 가장 낮았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유형별 어린이집의 근무환경, 조건, 교사의 직무 만족도 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아동학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녀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성적학대에 대한 인식은 이는 자녀가 있는 교사가 자녀가 없는 교사보다 성적학대 인식이 높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자녀를 둔 부모가 영아교사보다 성적학대 인식이 높게 나왔다고 보고한 고이(201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나 맥락은 같이한다. 따라서 자녀유무는 성적학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배경요인이며 더불어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 2)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식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신고의무제에 대한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전반적인 인식의 경우 영아교사들은 신고의무제에 대한 정의, 개정, 신고기관 등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학대 행위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또한 면담을 통해 신고의무제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구체적인 법 조항, 신고 의무자 규정, 정확한 학대 신고 절차 등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신고의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윤소연(2004)의 연구에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이 신고의무제 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 처벌 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았던 결과와 대조적으로 나타났고 강명자(2006)에서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조항과 관련된 인지도가 높게 나왔던 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최미영(2007) 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이 신고의무제에 대해 들어보고 알고는 있으나 아동복지법의 신고의무제 규정, 학대 행위 및 처벌 규정, 신고절차 등과 관련된 인지도는 비교적 낮게 나온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나 아동복지 양육시설 종사와 같은 직업군은 아동학대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나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영아 및 유아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만 인식할 뿐 아동학대 관련 법규 및 조항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대사례를 의심한 경우 방임은 다른 아동학대 유형보다 신고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현저히 낮았다. 이는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정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한 김정미(2009)에서의 연구 결과처럼 방임이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보다 여러 위험요인에서 위험도가 낮게 나온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박미경(2005) 연구에서 보면 유형별 방임(신체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은 결국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아동의 비행, 가정의 해체 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아동의 방임을 등안시 하지 않고 아동이 방임 당하고 있지는 않은 지 유심히 살펴보며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영아교사들은 아동학대를 의심했을 시 신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어서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신고의무에 관한 인식 연구를 한 강명자(200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음에도 발견 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학대라고 명확한 확신이 없어서라고 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영아교사가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어서라고 한 응답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김혜중(2008)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학대발견 시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학대라는 명확한 증거와 확신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라고 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어린이집 영아교사 뿐만 아니라 여러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라는 의심을 했을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때문에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교육에서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명확한 기준, 그에 따른 대처방법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좀 더 보강하여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동학대 미신고 시 과반수이상의 영아교사들은 처벌을 찬성하였고 처벌정도는 신고의무제에 의한 재교육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최미영(2007)

의 연구결과에서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시 처벌을 찬성하였고 처벌정도는 신고 의무제에 의한 재교육이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강선아(2006)의 노인 학대 목격실태 보고 및 신고의무자 처벌 태도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의 응답 결과 신고의무 미 이행자 처벌에 찬성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처벌정도는 신고의무제에 대한 재교육이라며 이 결과 또한 본인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처벌의 필요성은 있지만 처벌 수준은 경미하게 받아야 한다는 의미였고 그 이유는 앞서 연구결과처럼 학대와 훈육의 구분의 어려움, 신고하지 못했던 교사를 이해하기 때문 등의 이유와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면담결과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신고의무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두어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신고의무제와 관련된 교육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개해나갈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학대 예방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수 이상이 나왔다. 이는 최승혜(2007) 연구 결과에서 아동학대 관련기관과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교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박세희(2008) 연구 결과에서 정부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를 통하여 아동뿐만 아닌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내용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영아학대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다.

첫째, 영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영아학대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이 가정, 국공립, 법인, 민간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이 가정, 국공립, 법인, 민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적학대에 대한 인식은 자녀가 있는 교사가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이 가정, 국공립, 법인, 민간에 따라, 방임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영아교사들은 신고의무제에 대해 알고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학대 행위 및 처벌 규정 등 구체적인 신고의무제와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교사들은 지금까지 학대 사례를 의심했던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만약 의심되는 학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하겠지만, 훈육과 학대와의 명확한 구별이 없어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아동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의 학대를 막기 위해,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홍보로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제시한 결론을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만 2세 이하 영아반 담임교사

에 한정지어 연구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집 외에도 영아반이 있는 놀이학교 교실도 있고 담임교사 외에도 보조교사, 부담임 교사 등 담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함께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육보조 인력이 유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교육기관 등에서 미치는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일대의 영아교사의 영아학대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가정, 국·공립, 법인, 민간 및 기타 순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지역을 축소하고 어린이집 유형마다 근무환경, 어린이집 규모, 교사 연수 횟수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세분화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아교사 인식을 조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양적연구가 아닌 좀 더 깊은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인 연구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창구(2003). 아동학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명자(2006). 사회복지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인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국가법령정보센터(2014). <http://www.law.go.kr>
- 규제개혁위원회(2014). <http://www.rrc.go.kr>
- 고이(2014). 영아 어머니와 영아학대에 대한 인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굿네이버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http://www.korea1391.org>
- 김서호(2007).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연(2009). 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교육 인식조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미(200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과 신고행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윤(2000).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옥(2004).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있어 신고의무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양(2003). 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영희(2009).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3). 549-569

- 박기선(2007). 어린이집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인식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 정책대학원
- 박동연(2011).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에 따른 신고의무 태도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세희(2007).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숙인(2007).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적 대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미(2010).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지와 대응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연구 26(1). 119-128.
- 박종택(2012). 아동학대 현황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아동의 오늘과 내일. 2012년도 보건복지부 세미나 발표. 89-112.
- 방풍규(2011).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4(1). 51-70
- 배선윤(2002).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통계청(2014). <http://www.mw.go.kr>
- 보건복지콜센터(2014). <http://www.129.go.kr>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http://child.seoul.go.kr>
- 서윤경(200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준화(2007).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경숙(2006).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교사 신고의무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재진(2012). 아동학대 현황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아동의 오늘과 내일. 2012년도 보건복지부 세미나 발표. 41-83.
- 오은영(2013).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에 대한 부모의 인식.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현주(2007). 유아교사의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미정(201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에 따른 직무만족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선오·박복숙(20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연구. 복지행정논총, 21(2). 25-59
- 윤소연(2004).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희진(2008). 아동학대와 보육교사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나영(2002).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향(2011).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분석.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훈(2013).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의 인식.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희(2005).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주(2007). 유아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형(200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제6판)**. 서울: 학지사.

- 이인실(2003).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육교사들의 대처방안.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선희(2014).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규제 평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희(2004). 아동 학대예방과 보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미(2004).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인(2007).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 행정 권한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4.
- 장정애(2013). 유아교사의 영유아학대 및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민선(2003).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복희(2011). **아동발달 (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 주선희(2002).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수길, 주명국(2007). 아동복지 강론. 서울: 양서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 <http://www.koreal391.org>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 <http://www.koreal391.org>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4). <http://central.childcare.go.kr>
- 정진이(2014). 보육교사의 인권의식 및 민감성과 영유아학대 인식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은민(200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미영(2007). 아동학대와 교사의 신고 의무제 인식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승혜(2007).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주봉(2011). 피학대경험이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상주(2005).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len-Meares, P., Washington, R. O., & Welsh, B. L. (1986). *Social Work in Education, 17*, 40-47
- Hare, I. (1994). School social work in transition. *Social Work in Education, 16*(1), 64-68.

# ABSTRACT

## The Perception of Infant Abuse and Compulsory Report System by Daycare Center Teachers

Lim, Jung-mi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how daycare center teachers show different perception of infant abus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w they interpret the compulsory report system. In order to do so, the following research topics have been composed.

1. Do daycare center teachers show different perception of infant abus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work experience, education level, with or without children at home, and the type of daycare center)?
2. How do daycare center teachers interpret the compulsory report system?

The research was targeted to daycare center teachers responsible for infants under age 2 currently employed in Seoul, Gyeonggi are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infant abuse and compulsory report system, the researcher distributed a total of 300 questionnaires to the daycare center teachers. Among the 275 questionnaires that were submitted back, insincere responses were excluded. Eventually, a total of 264 sincere responses were applied to the research. To supplement some of the opinions that could not be found through the questionnaire, the researcher also interviewed 8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To measure the perception of infant abuse by the daycare center teachers, the researcher revised and reinforced the method by Ji Yoon Kim (2000) by adjusting the standard to infants. The researcher took the same approach to the compulsory report system by utilizing the survey devised by Mi Yeong Choi (2007). The collected data went through statistical treatment by frequency analysis, F-Test, and ANOVA for each research topic.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after evaluating the perception of infant abus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daycare center teachers, the researcher found out that percep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physical abuse by the education level and the type of daycare center, and in emotional abuse by the type of daycare center.

Moreover, percep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ual abuse by the type of daycare center, and in child neglect by the educational level and work experience.

Second, after evaluating the perception of compulsory report system by the daycare center teachers,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were aware of

such system, but not familiar with the details such as the definition of abuse and punishment regulations. In addition, the daycare center teachers responded that although they did not doubt the presence of abuse in the past, and that they would report such a case when encountering abuse, they were having a hard time actually making a report due to the lack of a clear distinction between moral discipline and abuse. However,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teachers felt the need for making reports to defe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fants, to prevent further abuse from happening, and to be responsible as teachers protecting the infants. Moreover, they also believ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intervene and publicize the issue to prevent further infant abuse.

## V. 부록

1. 영아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어린이집 영아교사 인식 설문지



### <영아학대에 대한 설문지>

※ 다음은 영아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의 신체적 증상 및 행동적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영아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번호에 V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영아의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2	영아의 생식기에 통증이나 가려움이 있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3	영아의 등에 알 수 없는 멍과 매를 맞은 자국이 있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4	영아가 날씨나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당한 옷을 입고 다닌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5	영아가 항상 몸을 흔들거나 물어뜯거나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한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6	영아의 몸에 설명되지 않는 화상과 골절상이 입은 흔적이 있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7	영아가 몸에 꼬집히거나 물린 자국이 있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8	영아가 다쳤거나 상처가 있어도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9	영아가 고열, 설사 등 아픈 증상을 보여도 내버려 둔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10	영아의 팬티나 또는 성기부분에 핏자국이 있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11	낮잠시간에 가정에서 보내준 영아의 이불이 매번 더럽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12	영아가 자주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13	영아가 신체적으로 접촉을 할 때마다 깜짝 놀란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14	영아가 항상 배고파하고 영양결핍을 보인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15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지 않고 주로 혼자 놀이를 한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16	영아의 기저귀나 팬티에 대·소변이 묻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17	영아가 자신의 성기 주위를 자꾸 만지려고 한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18	영아가 낮잠 시간을 많이 불안해한다면 나는 영유아학대라 생각한다.	1	2	3	4	5



학대자에 대한 처벌 규정 \_\_\_\_\_

아동학대 신고절차 \_\_\_\_\_

5. 담당한 아동 중에서 학대 사례로 의심되는 아동을 본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6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 (9번으로 바로 가세요)

6. 학대로 의심된 아동이 있었다면 학대 유형과 발견 분포를 체크하여 주세요.

- ① 전혀 보지 못했다      ② 가끔 본적이 있다.      ③ 자주 보았다.

신체적 학대	_____	_____	_____
정서적 학대	_____	_____	_____
성적학대	_____	_____	_____
방임	_____	_____	_____

7. 학대 사례를 보신 적이 있다면 신고를 하셨습니까?

- ① 예(9번으로 바로 가세요)      ② 아니오 (8번으로 가세요)

8. 학대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훈육과 학대와의 명확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 ②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 ③ 학부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 ④ 발견능력이 없고 업무로 인하여 바쁘기 때문에
- 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⑥ 기타의견 \_\_\_\_ (구체적으로: \_\_\_\_\_ )





17. 선생님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아동보호정책 수립
- ②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 ③ 아동학대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양성
- ④ 기타의견 \_\_\_\_ (구체적으로: \_\_\_\_\_ )

1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적인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 ② 신변노출에 대한 거부감
- ③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 ④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어서
- ⑤ 기타의견 \_\_\_\_ (구체적으로: \_\_\_\_\_ )

19.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등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사항들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여 1,2 순위로 기재해 주세요)

- ① 신고자 비밀보장 \_\_\_\_\_
- ② 신고시 즉각적인 개입 \_\_\_\_\_
- ③ 신고시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 \_\_\_\_\_
- ④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변화 \_\_\_\_\_
- ⑤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_\_\_\_\_
- ⑥ 기타의견 \_\_\_\_ (구체적으로: \_\_\_\_\_ )

바쁘신 중에 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